

ADVISORY | Anti-Corruption

2014.1

반부패법 집행 동향과 전개 (2014)

2013 년 부정부패 방지법 집행은 활발했다. 억단위의 반부패법 관련 합의가 재차 이루어 졌으며,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 10 건 중 2 건이 2013 년에 있었다. 개인 행위에 집중하는 경향도 계속되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다수의 개인들을 FCPA 위반으로 기소했음을 발표했다. 미국 외 지역에서도 2013 년 한 해 동안 반부패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다국적 제약 회사의 활동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 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 브라질의 신규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 인도의 반부정이득 감시체계의 설립, 캐나다의 해외 부정부패 방지법 확대 등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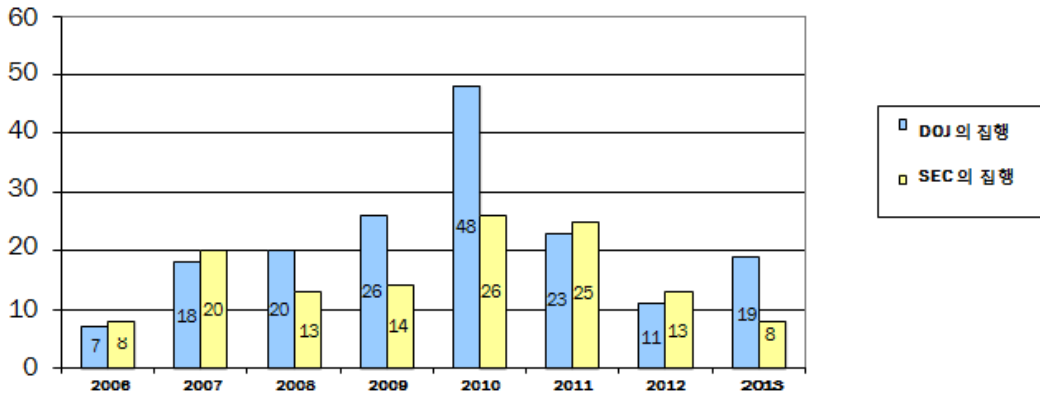
목차

2013 년 반부패법 집행의 교훈	2
• 거액의 FCPA 배상금은 계속될 것.....	2
• DOJ 는 개인 피고인들에 계속 집중, SEC 역시 행보를 같이 할 듯	3
• FCPA 의 관할권에 대한 당국의 해석유지될 듯.....	4
• 미 당국, 수사 협조와 컴플라이언스 정책 개선의 중요성 강조	6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여행, 선물, 접대에 집중해야	8
• 규제당국은 세관 및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에 계속 집중	8
• 기업 채용 행태도 조사 대상.....	9
• ‘하이브리드 감독’ 트렌드 계속	10
• 생명 과학 분야에 포커스 계속	10
• 중국 내 행위에 대한 미국과 중국 정부의 관심 계속.....	11
전세계적 집행 추세	12
• 반부패법 신설 및 강화	12
• 초국가적 협력 확대.....	13
• 세계적 법 집행.....	13
• 국제금융기구 입찰 금지	14
2014 년도 전망	15
• 영국에서 DPA 도입.....	15
• SFO 는 “범과 파리는 같이 잡는다” 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문별 소탕작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발표.....	15
• Dodd-Frank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FCPA 혐의 증가 반면, 사법부 판정 반보복 규정(anti-retaliation provisions)의 범위 국한.....	16
• 최근 전망에 의하면 타결에 관한 더 엄격한 사법 심사 예상	17
• 2014 년 안으로 “Foreign Official (외국 정부 관리)”의 범위에 관한 첫 항소법원 판결 예상.....	17

2013년 반부패법 집행의 교훈

2013년에는 집행 처분의 횡수와 그에 따른 배상금 액수가 둘 다 증가했다. 미국 규제당국이 발표한 FCPA 집행 처분은 총 27건¹으로 이 중 19건은 DOJ에 의해, 8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 의한 집행이었다. 이는 7억2천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2012년 배상금 총액의 3배에 달한다.

DOJ와 SEC의 집행 처분



총 27건의 집행 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 및 공개 수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2014년에 명심해야 할 10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거액의 FCPA 배상금은 계속될 것

2013년 집행의 크기와 규모가 시사하는 바는, 2012년에 거액 합의의 감소가 새로운 경향이 아닌 하나의 변칙이었다는 것이다. 작년 배상액 총액 중 5억5천만 달러 이상이 두 개의 합의 건에서 비롯하였는데, 두 건 모두 사상 최대 규모 FCPA 합의 상위 10위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석유 및 가스 기업이 대상이다. 역대 4위에 이름을 올린 프랑스 기업 Total S.A.는 이란의 석유 및 가스전에 접근하기 위한 불법 행위로 DOJ와 SEC에 기소되어 3억9천8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9위는 스위스 기업 Weatherford International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의 FCPA 위반에 대해 DOJ와 SEC에 1억5천2백6십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DOJ는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과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하여 Weatherford를 수출 규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추가로 1억 달러를 부과하였다. 2013년 10월에 개최된 American Bar Association 주관 회의에서

¹ SEC는 또한 FCPA의 회계 규정 및 기타 연방 증권법(아래에서 자세히 언급)을 위반한 중국 기업 2개와 개인 피고인 3명을 기소했는데, SEC가 발표한 2013년 반부패법 집행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DOJ와 SEC의 FCPA 부문장들은 일련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양 기관은 전략을 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련의 수사'에 장기간 지속되어온 Wal-Mart 등 주요 다국적 기업 수사가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액 배상금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거액 합의 추세가 2014년에도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새해가 밝자마자 지난 1월 9일 DOJ와 SEC는 알루미늄 산업과 연계된 바레인 공무원에 금품 제공을 모의한 혐의에 대해 Alcoa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의 배상금은 3억5천4백만 달러로, FCPA 합의 사상 5번째 규모이다. 영국 중대부정단속국(Serious Fraud Office; 이하 SFO) 역시 동일 사건에 대해 바레인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런던의 한 사업가 Victor Dahdaleh를 기소했으나, 핵심 증인의 증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재판 도중 2013년 12월에 기소를 취하였다.

DOJ는 개인 피고인들에 계속 집중, SEC 역시 행보를 같이 할 듯

작년 FCPA 집행자들은 계속해서 개인에 대한 기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 DOJ는 2 분기에만 10 명의 개인에 대해 FCPA 기소를 발표했다. 그 중 몇 건은 2011 년과 2012 년에 기소되어 작년에서야 공개된 것인 반면, 새로이 기소되어 발표된 사건들도 있어 DOJ가 계속해서 기업들 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FCPA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이 확실해졌다.

개인을 피고로 한 주목할 만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 **BizJet 임원들.** 2013년 4월, DOJ는 BizJet의 전직 임원 4명을 기소했다. BizJet은 중남미에서의 항공기 정비와 수리에 대한 부적절한 금품 지급과 관련해 2012년 3월에 DOJ와 합의한 바 있다. 피고인 중 2명은 아직 수배 중이지만, 나머지 2명은 수사 동안 DOJ에 협조했다. DOJ는 한 피고인을 첩자로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FCPA 사건에 대해 모든 수사 도구들을 총동원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였다.
- **Alstom 임원들.** 2013년 DOJ는 수 개월에 걸쳐 고속 레일 부품 및 서비스 업체인 프랑스 Alstom의 전현직 임원 4명을 기소했다. BizJet과 마찬가지로 DOJ는 처음에는 Alstom 피고인 2명에 대해 비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중 한 명이 JFK 공항에서 체포된 후에야 제소 사실을 발표했다. Alstom 사건은 DOJ가 수동적으로 자진고발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Alstom 법인은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lstom 임원들이 기소 당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을 먼저 기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개인 피고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타 분야의 법집행 당국들도 개인을 우선 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DOJ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적극 활용할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Direct Access Partners 직원들.** 개인을 피고로 한 또 다른 사건으로 브로커 딜러인 Direct Access Partners (DAP)의 직원 3명을 DOJ가 기소하였다. 해당 혐의는 SEC 뉴욕 지부 브로커-딜러 감독 직원이 DAP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두 기관이 상대의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FCPA 수사 방해.** DOJ는 프랑스 국적인 Frederic Cilins가 대배심 (grand jury)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사법 방해죄로 기소하였다. 혐의에는 “문서 파괴 및 증인의 거짓 증언 유도 모의”가 포함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DOJ가 전통적 공소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DOJ의 개인에 대한 기소와 더불어, 지난 해에는 SEC 역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013년 10월 연설에서 SEC의 새로운 위원장 Mary Jo White는 “SEC가 기업에서 시작해 개인으로 좁혀 들어가기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우선 검토한 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해”가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이 실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행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일이나, White 위원장과 집행부장 Andrew Ceresney의 지휘 하에 SEC가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FCPA의 관할권에 대한 당국의 해석 유지될 듯

2012년 FCPA 지침(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서 DOJ 와 SEC가 채택한 FCPA 관할권 해석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작년의 집행 조치들은 관할권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법원이 이에 개입할 것임을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 2013년 FCPA 집행당국의 관할권 해석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른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적게나마 있었던 법원 판결 역시 집행의 판도를 움직이는 데에는 실패했다.

- SEC v. Straub에서 Richard J. Sullivan 뉴욕 남부 지구 판사는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되어 속인적 관할권의 과정 요건인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s)”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Magyar Telekom의 전직 임원 3명의 기각 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계 감사인에게 한 진술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최소 접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법원은 기소장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인” 문서를 포함한 피고인의 이메일이 “미국 내에 위치한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전송되었거나 이에 저장”되었으므로 피고인은 FCPA 위반 행위를 목적으로 주(州)간 통상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FCPA 관할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 SEC v. Sharef에서 Shira A. Scheindlin 뉴욕 남부 지부 판사는 2011년 SEC에 의해 기소된 Siemens AG의 전직 임원 7명 중 하나인 독일 국적의 Herbert Steffen의 집행 중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Straub 사건 피고인들과는 달리 Steffen이 뇌물 제공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그가 SEC 제출 문서 위조나 회계

감사인에 대한 거짓 진술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SEC가 제기한 바 없으므로 최소 접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속인적 관할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FCPA 뇌물수수 방지 조항의 주간 통상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위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한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중대한 사건이 없을 것을 가정하면, 집행당국은 계속해서 FCPA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있었던 아래의 집행 조치들은 이러한 예측에 더욱 힘을 실어 준다.

- **Total:** Total과의 3억9천8백만 달러 규모 합의에서 DOJ의 관할권 주장은 뉴욕을 통한 한 건의 송금에 근거하였다. 모의를 구성하는 나머지 행위는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10년도 전에 일어난 행위가 모의죄 구성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검사들이 모의죄를 공소시효인 5년보다 더 오래 전의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한 연장 합의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Bilfinger:** 2013년 10월, DOJ는 독일의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기업인 Bilfinger SE와의 합의를 발표했다. Bilfinger는 3억8천7백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취득하고자 나이지리아 정부 관료에게 뇌물 제공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3천2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Bilfinger는 Willbros Group의 자회사들과 FCPA 위반행위를 공모하였으며 위법 행위에서 합작투자자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Willbros와 그 자회사 하나는 2008년 5월 합의했고, Willbros 전직 임원 2명과 컨설턴트 1명 또한 2006년에서 2009년에 FCPA를 위반했음을 시인했다.) Bilfinger 사례는 대체로 해외에서 활동하며 미국 내 issuer도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DOJ가 FCPA 위반 혐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여기서 검사들은 Bilfinger가 issuer이며 따라서 FCPA 반뇌물 규정의 적용을 받는 Willbros와 공모했다는 사실에 의존했다. 또 “주(州)간 및 국가간통상을 위한 모든 수단과 instrumentalities”를 활용했다는 증거로 (1) 약속한 뇌물 제공 관련 논의를 위해 탑승한 미국 내 도시간 비행과 (2) 미국에서 독일로의 송금건이 제시되었다.
- **ADM:** 2013년 12월,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ADM)는 자회사들이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에게 1억달러가 넘는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5천4백2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DOJ 및 SEC와 합의 하였다. ADM의 우크라이나 자회사 ACTI Ukraine는 FCPA의 반뇌물 규정 위반 공모 혐의에 관한 형사 기소 내용을 인정하였다.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ACTI Ukraine 직원들이 일리노이에 위치한 ADM 직원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ADM 독일 법인(공모자이나 기소되지 않음) 직원들이 ADM 조세 부서의 임원에게 부가가치세의 내역에 대해 어떻게 호도 진술을 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기업인 ADM은 장부기록 조항과 내부통제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DOJ와 불기소 합의를 맺었으며, SEC와는

우크라이나 관련 혐의에 대해 합의하였다. ADM의 중남미 자회사가 참여한 베네주엘라 합작투자사가 부적절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한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되었다.

미 당국, 수사 협조와 컴플라이언스 정책 개선의 중요성 강조

2013년 다수의 FCPA 합의들은, 회사가 먼저 정보를 제공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일단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당국에 철저히 협조하여야 함을 재차 각인시켰다. 또 정부는 기업이 내부적 부패 관련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 개선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2013년 합의 사례들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엄격히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DPA)이나 비기소약정(non-prosecution agreements; NPA) 기간 동안 정부의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한다.

- Weatherford: 협조와 컴플라이언스 개선으로 패널티 감소.** Weatherford 합의는 협조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규제기관은 Weatherford의 행위가 회사 내에 구조적으로 팽배해 있었으며 “뇌물과 부적절한 금전 지급이 Weatherford가 평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Weatherford는 수사 개시 당시에는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인 증인에 대해 부재 혹은 사망했다고 SEC에 보고하고, 직원들의 전자 데이터를 삭제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조사 기관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나 Weatherford는 곧 접근법을 바꾸었다. 수사 초반의 협조 거부에 대해 SEC로부터 높은 패널티를 부과 받기는 했으나, DOJ의 패널티는 선고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다. 패널티가 완화된 이유 중 하나는 Weatherford의 광범위한 협조 및 이전의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Weatherford는 (i)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내부 조사를 시행했고, (ii) 미국 및 해외의 직원들이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iii) 380만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제공 하였으며 (iv) 위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을 징계했다.

이 합의는 정부가 기대하는 컴플라이언스 검토와 개선 방식에 대한 실마리를 줬다. 언론에 의하면 Weatherford의 초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내부 규제의 부재”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지정된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나 담당자가 없었고,” “반부정부패 정책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았으며,” “관련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협조와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Weatherford는 (i) 활동을 전개 중인 다수의 국가에서 30개가 넘는 반부정부패 조사를 실시했고, (ii)기업의 준수 부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고 준수 업무를 책임지는 고위 직책을 만들었고, (iii) 외부 중개인과 컨설턴트에 대한 반부패 실사 절차를 현저히 개선하였으며 (iv)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를 고용해 회사 정책과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 Stryker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유의미한” 개선 인정.** 2013년 10월, 의료 기기 제조사 Stryker Corporation은 FCPA 장부기록조항과 내부통제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천3백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공공 보건 기관의 공무원들에 약 2백2십만 달러의 부적절한 금전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과정에서 SEC는 Stryker가 부정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크게 개선시킨 점을 강조했다. 부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Stryker는 내부 부정부패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SEC는 규정이 “불충분하고 지역, 전국 차원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더불어 Stryker의 해외 자회사들이 “중양화되지 않고 국가별로 조직되어 해당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적용되는 개별 규정과 지침을 따르”고 있음에 주목 하였다. 수사 진행 도중에 Stryker는 전사 부정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 해외 공무원들, 의료 전문가들, 컨설턴트, 배급사와의 관계 수립 시 따라야 할 실사 및 문서화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하고, (ii) 반부패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및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iii)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hief Compliance Officer) 및 풀타임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직으로 이루어진 상당 규모의 팀을 신설하고, (iv) 반부패 교육을 모든 직원들에게 확대 시행하였으며 (v) 윤리 상담 전화를 설치하였다.

- **ADM의 유의미한 협조 및 전세계적 리스크 평가 인정.** Weatherford나 Stryker와 마찬가지로, ADM 역시 광범위한 협조와 “신속,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개선 조치로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ADM은 (i) 전세계적인 리스크 평가 및 그에 상응하는 세계적 내부 조사 실시, (ii) 내부 조사 결과에 대해 DOJ에 수차례 발표, (iii) 자발적으로 전현직 직원들이 DOJ 인터뷰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iv) DOJ를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분류하여 제공하였다. SEC는 또한 외부 감사가 우크라이나에 문제를 발견한 즉시 ADM이 수사를 개시한 점, 해당 위법 행위에 연관된 직원들을 해고한 점에 관한 ADM의 협조를 인정하였다.
- **협조만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부재를 메울 수는 없어.** 2013년, Ralph Lauren은 자사 아르헨티나 세관 브로커에게 부정 지급 사실을 규제당국에 보고하고 혐의건에 관한 기소를 합의했다. Ralph Lauren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바탕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법 행위를 발견했다. Ralph Lauren은 내부 조사결과를 SEC와 DOJ에 자발적으로 보고한 후 세관 브로커 해고, SEC에의 광범위한 협조 등 다수의 교정조치를 취했다. 그 일환으로 실시한 전세계적 내부 조사에서 다른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Ralph Lauren의 위법 행위 자발 보고, 교정 조치, 적극적 협조에도 불구하고 취하는 없었다. 대신 Ralph Lauren은 DOJ, SEC와 불기소협정을 맺었고, 총 1백6십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했다. DOJ FCPA 부서장은 2012년 중국 내 Morgan Stanley 수사 취하의 사례를 들어 Ralph Lauren이 기소 취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중요한 차이점” 은 “Ralph Lauren은 아르헨티나에 부정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다” 는 점이다. 반면 Morgan Stanley는 중국에 부정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해 놓은 상태였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여행, 선물, 접대에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

2013년 다수의 집행 조치를 살펴보면 정부 관료 대상 여행, 선물, 접대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례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여행과 접대에 집중된 Diebold 사례.** 2013년 10월, Diebold는 DOJ 및 SEC의 FCPA 관련 기소를 4천8백만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했다. 집행 조치는 부분적으로 Diebold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국유 및 국영 은행 소속인 고객들에게 제공한 선물, 유흥, 사업상 목적이 아닌 여행 경비에 대한 것이었다. SEC는 다음과 같이 언론에 발표했다: “돈뭉치든 호화스러운 유럽 여행이든, 뇌물은 뇌물이다.”
- **사업차 출장도 부적절한 의도의 조짐이 보이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앞서 다룬 Stryker의 SEC와의 합의에는 Stryker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부적절하게 지불한 후, 이를 정당한 출장 경비로 기록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명확히 정당한 사업차 출장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Stryker는 폴란드의 병원장과 그 배우자의 뉴욕 6박 숙박비, 브로드웨이 공연 2개, 아루바로의 5일 여행 경비를 지불했다. 하지만 합의를 보면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출장 경비도 어떤 보상(*quid pro quo*)을 의도하고 지급되었다면 불법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Stryker Romania는 계약 수주를 기대하고 한 루마니아 의사의 컨퍼런스 참석 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자격이 충분한 의사를 정당한 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하도록 스폰서하는 것은 걸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비용 지불의 진정한 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스포츠 행사는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시험대.** Weatherford 기소 건에서 SEC는 Weatherford가 알제리 국유기업 임원에게 2006년 독일 월드컵 관람 등 부적절한 여행과 유흥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 BHP Biliton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스폰서십의 일부로 제공한 접대에 대해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에 Weatherford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가오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스폰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대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유흥 및 접대에 관한 내부 규정을 재검토 및 강화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당국은 세관 및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에 계속 집중

2013년 집행 조치를 통해 집행당국이 계속해서 세관 및 국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금전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관 및 국세청

문제를 자사 내부 정기 반부패 리스크 평가에 포함하고, 내부 규정 및 감사가 해당 분야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기나긴 Panalpina 그룹 수사.** 2013년 4월, Parker Drilling Company 는 DOJ 와 SEC가 제기한 FCPA 위반 혐의건 종결을 위해 1천5백9십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Parker Drilling은 지급할 대금이 자사의 세관 및 조세법 준수 여부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것을 알고도 중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승인했다.

Parker Drilling 합의는 Panalpina 그룹 및 그룹의 석유가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DOJ 수사에서 비롯된 가장 최근의 합의이다. 2010년, Panalpina와 6개 고객사는 FCPA 관련 혐의 합의에 총 2억 3천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2013년, Panalpina의 또 다른 관계 기업인 Nabors Industries을 상대로 DOJ는 집행 조치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2012년 SEC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련의 Panalpina 관련 사건들은 DOJ는 증거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간다는 DOJ의 FCPA 부문장의 발언과 일치한다. Nabors Industries에 대한 처분 거부와 Parker Drilling의 합의가 길었던 Panalpina 그룹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지도 모른다.

- **세관 관료에 대한 지급은 대부분 급행료가 아님.** DOJ의 Parker Drilling 합의 발표 1주일 후 DOJ와 SEC는 Ralph Lauren의 아르헨티나 세관원 뇌물 지급 혐의에 대한 NPA를 발표했다. DOJ NPA에는 "United States Code, Section 78dd-1(b) 제15조항의 정의에 따른 통상적 행정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즉 해당 지급이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가 아니라는 문장이 있어 주목을 끈다. 2010년 세관원에의 금전 지급에 관련된 또 다른 사례이며 위 Panalpina건과 함께 해결된 Noble Corporation와 DOJ의 DPA에도 유사한 언급이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비교적 적은 액수를 세관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급행료로 간주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ADM 자회사의 금전 지급 목적은 부가가치세 환급.** 위에서 다룬 ADM 사례에서 ADM의 우크라이나 및 독일 자회사는 1억 달러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 관료에게 2002년부터 2008년에 걸쳐 2천2백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DM 자회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합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부족을 근거로 환급을 중단하고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이므로,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이슈를 리스크 평가나 컴플라이언스 조사의 일환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기업 채용 행태도 조사 대상

지난 해 중국에서는 금융업계의 채용 행태가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금융기관이 사업 기회 확장을 위해 유력한 가계 출신 중국 관료의 자녀를 채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시작이었다. 다른 은행과

헤지펀드의 채용 행태도 미국 정부 조사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로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정부 관료와 그 친인척이 연루되는 채용 행태도 다루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정부 당국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채용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가 통제하는 사업 기회가 많은 국가의 경우 그 가능성이 특히 높다.

‘하이브리드 감독’ 트렌드 계속

2013년에 DOJ의 법 집행 조치를 해결한 7개 기업 중 4개는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중 기소유예합의기간 동안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지명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업은 1개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3개 기업에 대해서는 18개월의 ‘하이브리드’ 감독 기간을 두고 3년의 기소유예합의기간 중 후반기에는 기업이 자체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합의들은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이 “리스크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용”하되 “모든 사업 분야, 사업 활동, 시장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도록 요구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사례를 통해 FCPA 합의의 한 부분으로 자기 감독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명 과학 분야에 포커스 계속

- **중국, 의약품 업계 겨냥.** 2013년 여름, 중국과 세계의 언론은 중국 정부의 자국 및 다국적 제약 업체들에 대한 수사 관련 뉴스로 가득 찼다. GlaxoSmithKline(GSK)의 중국 법인 GSK China의 이사 4명을 수감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GSK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다국적 제약 업체와 중국 업체들이 정부 수사를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약 업체들은 중국 헬스케어전문가(HCP)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자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고, 지역 유통업체(특히 여행사)를 이용해 가상의 판촉 회의 및 청구서를 꾸며내 뇌물 제공을 위한 부정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HCP에게 호화로운 휴가 등을 제공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국 당국의 제약업계에 대한 관심은 다국적 기업 수사에서 멈추지 않고, 업계 내 뇌물 및 부정 행위의 공급 측과 수요 측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발표로까지 이어졌다. 2013년 12월 25일 중국건강가족계획위원회(NHFPC)는 “약품 구매와 판매를 위한 상업 뇌물 기록 수립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성(省) 차원에서 상업 뇌물 행위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2014년 3월 1일까지 국가 차원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NHFPC는 “헬스케어 업계 윤리 신장을 위한 9개 조항”도 발표하였다. 9개 조항의 상세 조문 중에는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HCP 및 헬스케어 단체의 특정 행동 금지 문서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HCP에 부정 대금 지불은 FCPA 회계 조항 위반.** 2013년 4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미국 상장 기업인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Philips)는 폴란드 자회사가 폴란드 HCP에 부정 대금을

지급해 회계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450만 달러를 지불하고 SEC와 합의했다. Phillips 합의를 통해 모회사-자회사 관계와 회계 조항과 관련해서 집행 당국이 FCPA를 폭 넓게 적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합의에는 issuer인 모회사가 자회사의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의심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SEC는 자회사의 허위 회계 항목이 issuer의 장부 기록에 반영될 경우 issuer가 장부 기록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10년 이상 유지해왔다.

- **DOJ와 SEC, HCP를 “해외 관리”로 취급.** 위에서 다룬 Phillips 합의와 Stryker 합의는 공공 기관이 고용한 HCP에의 대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동향과 일치한다. 규제당국은 국유 및 국영 기업의 고용인도 “해외 관리(foreign officials)”에 해당하도록 “instrumentality”를 폭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연방 제 13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에서 이 정의를 둘러싼 소송인 United States v. Esquenazi, No.11-15331이 진행 중이다. (아래 참조.)
- **기기 생산업체에 대한 수사 종결.** 미국 외부에서의 마케팅 및 판매 행위에 대해 5년간 수사를 받아온 의료 기기 생산업체인 Zimmer Holdings Inc.는 DOJ와 SEC로부터 수사 종결 통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몇 달 후 또 다른 기기 생산업체인 Medtronic 역시 DOJ와 SEC로부터 법 집행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 두 업체를 비롯한 몇몇 기기 생산업체들은 2007년 집행 당국으로부터 수사 통지를 받았다.

중국 내 행위에 대한 미국과 중국 정부의 관심 계속

- **규제당국과 중국 기업 및 시민과의 합의 잇따라.** 2013년 첫 FCPA 합의 당사자는 중국에 본사를 둔 Keyuan Petrochemicals Inc.와 Keyuan사의 전 CFO인 중국 국적 Li Aichun이었다. 두 피고는 FCPA의 장부 기록 조항을 비롯해 수 개의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특히 Keyuan사는 다수의 중국 정부 기구 관료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사용한 현금 계좌를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이 합의는 중국 기업이 FCPA 관련 처분을 받은 첫 사례로 보인다. 2주 후 또 다른 중국 기업 RINO International Corporation 및 RINO의 두 간부가 두 개의 재무 기록을 유지한 혐의에 대해 SEC와 합의했다. 이 두 합의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및 그 간부들 역시 다른 issuer와 마찬가지로 회계와 기업 지배구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뇌물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FCPA 회계 조항 위반 혐의로 집행 조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당국, 부패 척결에 박차.** 2013년에는 중국 규제당국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위에서 다룬 제약업계 수사 외에도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상공업청을 통해 (1) 정부 및 공산당 고위 관리와 대규모 국영기업 간부, (2) 중하급 정부 및 공산당 관리, (3) 상업 뇌물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수사했다. 특히 제약, 의료 기기, 건설 분야가 초점이었다. 중국 정부는 꾸준히 반부패 관련 정책을 발표해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세계적 집행 추세

2013년에는 중국 외에도 많은 국가의 반부패법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화된 반부패법이 각국에서 제정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반부패 관련 정부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미국 외 지역에서의 법 집행 강화는 새로운 협력의 기회와 시험대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증거 수집부터 사건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FCPA 집행당국과 기업들은 세계적 법 집행 강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에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반부패법 집행의 세계화는 기업들의 반 부패 정부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접근법에 지대한 함의를 지닐 수 있으므로 201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반부패법 신설 및 강화

- **브라질, 새 반부패법 입법.** 8월 브라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 수여, 담합 입찰 및 기타 공공 조달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에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을 신설했다. 이 전에는 개인만이 부정 행위로 기소될 수 있었다. 새롭게 제정된 브라질 기업 반 부패법(Clean Companies Act) 하에서는 “정부관리나 그와 관계가 있는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브라질 기업 및 해외 기업 및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entity)에 대해 민사 및 행정법 상의 제재가 가해진다. 해당 법은 (1) 담합 입찰 및 기타 관련 사기 행위 및 (2) “공공 기관, 기구, 관리의 수사 및 감독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2014년 1월 29일 발효되었다.
- **캐나다, 해외부정방지법 확대.** 2013년 6월 캐나다는 해외 관리 부패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CFPOA)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캐나다 국내에서의 반부패법 집행 확대와 때를 같이 하였다. 해당 법률이 해외 정부관리를 대상으로 한 부정 금품 지급을 금지하는 캐나다 법에 가져온 변화는 크게 네 가지로, (1) CFPOA의 관할권을 확대하여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정 행위가 벌어지는 장소와 무관하게 모두 CFPOA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2) 금품 지급의 지원이나 촉진을 금지하고, (3) 개인의 장부 기록 위조 행위를 위법으로 하고, (4) 해외 관리를 대상으로 한 뇌물 수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 **인도, 부패 감시기구 신설.** 2014년 1월, Pranab Mukherjee 인도 대통령은 인도 내의 부패 수사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는 록팔법(Lokpal and Lokayuktas Bill, 2013)에 서명했다. 현재 록팔법은 인도 정부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 정부 관리, 공공국제기구 및 사기업에 속한 개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인도 정부의 부패 척결에 대한 관심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 **러시아 개정 법, 기업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확립을 요구.** 2013년 1월 1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립할 의무를 지우는 러시아 반부패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초국가적 협력 확대

- **영국, 해외 뇌물 수수 태스크포스 신설.** 런던시 경찰은 2013년 6월 새롭게 체결된 해외 뇌물수수 방지 국경간 협약의 일환으로서 해외 뇌물 수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였음을 발표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각국 해외부패 수사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및 OECD와 UN의 반부패 협약 지지를 목적으로 한다.

태스크포스는 호주 연방 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미국 연방수사국(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및 런던시 경찰청 반해외부패부로 구성되며 경찰 전문가 간의 관련 지식, 기술 및 수사 방법을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함으로써 해외 뇌물수수에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 법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 뇌물수수 추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미국-프랑스, Total 수사에 협력.** FBI의 상기 태스크포스의 참여에서 볼 수 있듯, 미국 집행당국은 해외 부패 수사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Total에 대한 집행 행위(위 참조)에 대해 미국 DOJ 형사국은 “주요 해외 뇌물 사건에서 프랑스와 미국 집행당국이 협조한 첫 사례”라고 논평하였다. 미국 DOJ와 SEC 뿐 아니라 프랑스 당국 역시도 Total의 회장과 CEO를 비롯한 네 명을 해외 부패 관련 프랑스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 형사법원에 기소하였다. 2013년 7월 프랑스 법원은 Total과 네 명의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세계적 법 집행

상기의 항목 외에도 각국의 2013년 집행 동향을 살펴본 결과 반부패법 집행의 세계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커빙턴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집행의 세계화가 눈에 띈다. 앞서 언급하였듯, 다수의 사법 관할권에 걸치는 법 집행의 증가로 각국 관계 당국의 상호 협조와 커뮤니케이션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이러한 협조가 있었으나, 협조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우리는 2014년에도 각국 협조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

- **네덜란드.** 2013년 12월 30일, 회계법인 KPMG의 네덜란드 지사(KPMG N.V.)는 고객사인 시공사 Ballast Nedam이 2002년과 2003년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외교관에게 지급한 뇌물을 숨기도록 도왔다는 혐의에 관해 네덜란드 당국과 700만 유로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Ballast Nedam은 이와 별도로 2012년 1,750만 유로에 합의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KPMG N.V.는 추가적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뇌물 수여 행위에 관여했던 전 KPMG N.V. 감사 파트너 세 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 **노르웨이.** 2014년 1월 초 노르웨이 당국은 노르웨이 비료 생산 기업인 Yara International의 스위스 자회사가 인도, 리비아의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러시아 납품업체에 부정한 대금을 지불했다는 혐의로 4,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르웨이 경제환경범죄 수사기소국(National Authorit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me)은 관련 개인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세계은행.** 2013년 4월 세계은행은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수주를 위해 방글라데시 공무원에게 부정 대금을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은 캐나다 엔지니어링 기업인 SNC-Lavalin Inc.와의 합의 결과 SNC에 대해 사상 최장 기간의 입찰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SNC 및 그 계열사 중 100개사는 10년간 세계은행이 출자하는 프로젝트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SNC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할 시 입찰 금지 기간은 8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세계은행의 입찰 금지로 SNC는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재건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 개발 은행이 출자하는 프로젝트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캐나다 관계 당국 역시 2013년 몇몇 SNC 직원을 뇌물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글라데시, 알제리 및 기타 국가에서의 부정 대금 지불에 관한 폭 넓은 수사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기구 입찰 금지

SNC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주요 국제금융기구(IFI)들은 부패, 사기, 담합 등 IFI가 출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의 각종 불법 행위 수사를 위한 내부 자원과 독자적 입찰 금지 정책을 갖추고 있다. 201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가 주요 IFI의 제재를 받았다. 대다수의 제재 조치를 주도한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청렴 담당 부총재(Integrity Vice President)가 세계은행 출자 프로젝트에서의 불법행위 수사 및 잠재적 입찰 금지 조치의 제재 이사회 회부를 담당하고 있다. 수사 개시 이후 IFI와 협조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세계은행, 유럽재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이 2010년 체결한 입찰 금지 상호 집행 합의에 따른 의무적 연쇄금수조치는 2013년에도 계속되었다. 합의에 따라 한 참여 IFI가 특정 입찰 금지 조치를 내리면, 그 근거가 되는 불법 행위가 다른 참여 IFI와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IFI의 입찰 금지로 이어지게 된다. IFI와 각국 집행당국과의 협조 및 사건 인계 역시 2013년에도 계속되었으며, 이것이 국가 집행당국의 기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IFI 출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IFI 입찰 금지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반부패법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IFI들은 2014년에도 관련 수사와 제재 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4 년도 전망

영국에서 DPA 도입

2013년 4월 영국은 특정 경제 범죄(뇌물 수수, 사기 및 자금세탁 포함)에 관하여 DPA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 법안의 효력 발생 시점은 2014년 2월로 예정되어있으며, 적용 시 DPA를 체결하는 기업체들은 위반 행위에 대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벌금 납부, 의무준수 프로그램 시행 혹은 업데이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 수익금 환수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대신 영국 SFO와 검찰청은 형사고발을 유예하기로 동의한다. 미국에서는 DPA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판사의 역할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는 대신, 영국판 DPA는 초기과정에서 판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DPA의 위반 혐의를 판사가 검토하게 된다. 이 또한 DPA 위반이 일어났는지 여부 및 배상 방안을 해당 집행기관이 결정하는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SFO가 대형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가운데, 2014년에는 DPA가 영국의 부패방지법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 된다.

SFO 는 “범과 파리는 같이 잡는다” 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하며 부문별 소탕작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발표

2013년 11월, SFO의 뇌물 및 부패 부문 공동책임자는 가장 복잡한 경제 범죄 사건들을 파헤치기 위해 SFO의 자원과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SFO는 2012년 12월에 롤스로이스사가 해외 시장(인도네시아, 중국 포함)의 중개거래자가 연루된 뇌물 수수 및 독직혐의들에 관한 정보를 SFO에게 전달하였다고 발표한 이후, 2013년 12월에 롤스로이스사를 상대로 뇌물 수수 및 독직혐의들에 관한 형사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SFO의 확고한 의지를 입증하였다.

“범을 잡는다”라는 SFO의 확고한 의지 차원인지는 모르나, SFO의 총책임자는 미국 집행기관이 여러 해 동안 해왔던 부문별 소탕작전을 영국에서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SFO는 경제 범죄에 취약한 건설, 공공 계약, 채취, 석유 및 가스 산업을 공략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Dodd-Frank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FCPA 혐의 증가 반면, 반보복 규정(anti-retaliation provisions)의 범위 국한하는 사법부 판결 잇달아

미국 SEC 의 내부 고발자 부분 2013 년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FCPA 관련 내부 고발건수가 회계연도 2012 년에 115 건(전체의 3.8%)에서 회계연도 2013 년 149 건(전체 4.6%)으로 증가 하였다. 또한 SEC 가 고발자의 신상 유추 가능한 정보 및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종류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였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미화 1400 만불이었다.

2013 년도에는 Dodd-Frank Act 의 반보복 규정(anti-retaliation provision)은 역외적용 될 수 없다고 미국 연방 법원이 또 한 번 판결을 내렸다. 2013 년 10 월, 뉴욕 남부 법원의 William H. Pauley III 판사는 반보복 규정은 역외적용이 되지 않는 “오직 국내에서 적용되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있어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건에서 대법원이 채택한 원칙으로, 치외법권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및 동일 규정 관련 2012 년 6 월 텍사스 남부 법원의 Nancy F. Atlas 판사의 판결을 적용하였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판결들이 해외 내부 고발자들에게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나, 내부 고발자 고발이 확연하게 감소 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 첫째, Dodd-Frank 반보복 규정의 치외법권에 관한 판결은 Dodd-Frank 내부고발자 포상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국적자인 Dodd Frank 내부 고발자는 반보복 규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내부고발 포상금 대상에는 해당된다. 둘째, 대다수의 내부고발자들은 고발 대상의 기업의 직원이 아니므로, 보복에 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Dodd-Frank 반보복 규정의 적용과는 관계없이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 현지 노동법 상으로 금할 수도 있으며, Dodd-Frank 법의 반보복 규정의 적용에 불문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기업의 의무준수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시에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U.S. Sentencing Guidelines)에 의거하여 회사가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근거한 양형 감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SEC 와 DOJ 집행에 있어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반보복 규정에 관한 치외법권 적용 판결이 회사가 내부 고발자들을 상대로 취하게 되는 행동에 관하여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SEC 내부고발 기관 책임자는 회사가 내부고발자들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언한 바가 있으며 “선의로 제보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고용주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 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오히려 내부 고발 포상금이 공시됨으로써, 내부 고발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전망에 의하면 합의 건에 관한 더 엄격한 사법 심사 예상

2013 년도 있었던 세 건 - DOJ v. HSBC, SEC v. Tyco International, and SEC v. IBM - 을 보면 2014 년도에는 연방 사법당국과 협상에 의한 타결에 관하여 더 엄격한 사법 심사가 적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 뉴욕 남부 지역 주 법원의 John Gleeson 판사는 DOJ 가 HSBC 의 자금세탁방지 제재 위반건에 관하여 기소 유예약정을 검토하는 과정 중, 법원의 "감독권한"에 의거, DPA 의 집행에 대한 승인 및 감독 권한을 선포하였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Gleeson 판사는 정부의 기소재량을 존중하고 HSBC DPA 를 망설임 없이 승인하였지만, 다른 연방 판사들이 법원의 감독권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부의 재량권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 판결은 중요할 수 있다.

미국 콜롬비아 주 법원의 Richard J. Leon 판사는 FCPA 관련 합의 건에 관하여 판사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Tyco 와 SEC 가 해외뇌물 수수건을 1310 만불에 합의했다고 공시한 후 9 개월이 지나서야, Leon 판사는 2 년동안 법원과 SEC 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해당건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i)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차 보고서, (ii) 잠재적 FCPA 위반사항에 관한 즉각적인 고지, (iii) 연방 범죄 수사, 연방 행정 소송, 혹은 중대 민사소송에 해당될 시 60 일 이내로 즉각적인 고지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eon 판사는 SEC 와 IBM 사이의 1000 만불 합의 건을 승인하기까지 2 년 이상을 소요하였다. 합의 조건에는 IBM 사가 2 년 동안 자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잠재적 FCPA 위반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IBM 사와 Tyco 사는 SEC 와 2000 년과 2006 년에 각각 합의를 하는 등 이전에도 집행조치의 대상이 된 바 있었다. 2014 년도에는 FCPA 관련 합의에 관하여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4 년 안으로 "Foreign Official (외국 정부 관리)"의 범위에 관한 첫 항소법원 판결 예상

2014 년 중에 국유기업 혹은 정부통제기업의 직원을 "foreign officials"로 간주하는 규제기관의 폭 넓은 "instrumentality" 정의에 관한 항소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본 이슈는 미국 제 11 연방순회법원 United States v. Esquenazi, No. 11-15331 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해당 항소건의 브리핑은 2012 년 10 월에 완료되었으며, 구두 변론은 2013 년 10 월에 완료되었다. Esquenazi 사건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 일어난 부당한 지불금으로부터 발생하였지만, FCPA 상에서의 "instrumentality" 및 "foreign official"에 대한 해석은 향후 법 집행에 관하여 다른 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ing the material discussed in this client advisory, please contact any of the following senior members of our Global Anti-Corruption Group or members of our Seoul Office:

Global Anti-Corruption Practice Group

Tammy Albarrán	+1.415.591.7066	talbarran@cov.com
Robert Amaee	+44.(0)20.7067.2139	ramae@cov.com
Stephen Anthony	+1.202.662.5105	santhony@cov.com
Bruce Baird	+1.202.662.5122	bbaird@cov.com
Lanny Breuer	+1.202.662.5674	lbreuer@cov.com
Eric Carlson	+86.10.5910.0503	ecarlson@cov.com
Casey Cooper	+1.202.662.5922	ccooper@cov.com
Christopher Denig	+1.202.662.5325	cdenig@cov.com
Steven Fagell (Co-Chair)	+1.202.662.5293	fagellse@cov.com
James Garland	+1.202.662.5337	jgarland@cov.com
Haywood Gilliam	+1.415.591.7030	hgilliam@cov.com
Ben Haley	+1.202.662.5194	bhaley@cov.com
Barbara Hoffman	+1.212.841.1143	bhoffman@cov.com
Robert Kelner	+1.202.662.5503	rkelner@cov.com
Nancy Kestenbaum	+1.212.841.1125	nkestenbaum@cov.com
David Lorello	+44.(0)20.7067.2012	dlorello@cov.com
Lynn Neils	+1.212.841.1011	lneils@cov.com
Mona Patel	+1.202.662.5797	mpatel@cov.com
Don Ridings (Co-Chair)	+1.202.662.5357	dridings@cov.com
John Rupp (Co-Chair)	+44.(0)20.7067.2009	jrupp@cov.com
Anita Stork	+1.415.591.7050	astork@cov.com
Daniel Suleiman	+1.202.662.5811	dsuleiman@cov.com
Alan Vinegrad	+1.212.841.1022	avinegrad@cov.com

Seoul Office

22nd Floor, Meritz Tower
382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135-934

William H. Park	+82.(02).6281.0001	wpark@cov.com
Christie Hyosung Tang	+82.(02).6281.0004	ctang@cov.com

This information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Readers should seek specific legal advice before acting with regard to the subjects mentioned herein.

Covington & Burling LLP, an international law firm, provides corporate, litigation and regulatory expertise to enable clients to achieve their goals. This communication is intended to bring relevant developments to our clients and other interested colleagues. Please send an email to unsubscribe@cov.com if you do not wish to receive future emails or electronic alerts.

© 2014 Covington & Burling LLP, 1201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2401. All rights reserved.